

#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786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23.

발 의 자 : 정춘숙 · 문미옥 · 양승조  
박주민 · 전혜숙 · 서영교  
우원식 · 남인순 · 강훈식  
권미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
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 신설).

##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, 장애인보호시설, 특별지원보호시설

아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보호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바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, 장애인보호시설, 특별지원 보호시설</p> <p>아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(생 략)</p>	